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 마련〉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6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 마련	3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1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12.
- (3) 회 부 일 : 2025.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
9까지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 급여의 지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조제1항),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용 및 수급권의 보호,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등을 규정하며,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u><신설></u>	제6조(사업)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6. ----- <u>제5호</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u>

현행	개정안
	<u>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u> <u>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u> <u>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정부의 지원) 정부는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안
<신 설>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6(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퇴직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현행	개정안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회원 5명 이내</u> <u>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u> <u>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u> <u>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u> <u>③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u>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6조의9(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무) 퇴직연금급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	제7조(재원) ----- ----- -----

현행	개정안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1. <u>회원의 부담금</u> 2. ~ 4. (생략)	----- ----- ----- -----. 1. <u>회원 또는 사용자</u>-----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¹⁾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구성됨.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²⁾ 이와 별개로 ④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①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IRP)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계약형과, ②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DB, DC, IRP는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

구 분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개 관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 외부위탁
운용감독	금융기관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자료: 고용노동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이고, 계약형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적고, 근로자로서는 제한적인 금융지식, 노후자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반면,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등 수탁인의 책임 아래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³⁾

3)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과제)」, 2015.10

□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회를 수탁법인으로 하여 적립금·부담금을 신탁하는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25년 7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는 6천억원, 회원 수는 5만 4천여명 수준임.⁴⁾

공제회의 주요사업⁵⁾은 적립형 공제급여(적금), 목돈수탁급여(예금)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급여 사업 등이 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등임.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관」

제5조(회원 자격조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7. 공제회 임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 · 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이러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공제회를 통한 장기적·집합적·전문적 투자로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제고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후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인력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결핵· 한센	지역 자활센터	사회 복지관	어린이집
전 체 시 설	시설수	63,766	23,035	6,484	4,007	418	139	6	250	473	28,954
	종사자	784,623	385,259	33,270	44,540	3,764	1,948	102	2,667	10,273	302,800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일반적인 기금형 퇴직연금의 한계로서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운용실패의 책임 귀속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이해상충에 빠지거나 단기 성과를 좇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운용 실패의 부담은 수탁법인이 아니라 운용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전가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특히, 공제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요건과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한 책무⁷⁾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나. 법 제2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 다.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추는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회계처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할 것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벌칙⁸⁾을 받게 됨.

개정안 제6조의9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공제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운용·관리하는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 제9조9)에 따르면,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감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전에

-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연금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적절한 요건 및 감독 방안 등의 보완수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수탁법인의 책무, 감사 및 감독 등 일반적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하는 복지업무의 공적 성격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¹⁰⁾등과 같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으나,

공제회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직역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재원 및 사업 운영비용 등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사실상의 보증으로 작용하여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¹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1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관한 구체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안 제6조의8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소득 보장 등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필요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준용토록 하여 실질적인 종사자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 근거 마련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의 일부 내용을 차용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낮음.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적용 받지 않으므로 형평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기획재정부) 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회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추가 필요 또한, 현행 개정안과 같이 고유식별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법령에 명시한다면 ‘당사자의 동의’ 문구를 삭제할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안에 대해 적극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퇴직급여(연금) 제도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

구분	퇴직급여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퇴직금 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금년 기준책임준비금 - 전년 기준책임준비금	"			"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갖춘 사업장	채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해당없음